

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1. 12. 9.
행정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1. 11. 16. 마포구청장

나. 회부일자: 2021. 11. 17.

다. 상정일자: 제251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행정건설위원회(2021.12.9.)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 【제안설명자: 자치행정과장 김종오】

가. 제안이유

자원봉사활동 참여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품 가액을 규정하고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속 자원봉사자에게 공공시설 이용 시 우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자원봉사 참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- 1) 자원봉사 참여자 경품 제공 가액 범위 마련(안 제16조제2호)
- 2) 자원봉사자증 발급 규정 신설(안 제16조의2)

3. 검토보고(전문위원 유준상)

- 본 개정안은 구청장이 제출하여 행정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

자원봉사활동 참여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품 가액을 규정하고,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속 자원봉사자에게 공공시설 이용 시 우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자원봉사 참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.

- 주요내용으로는 제16조제2호 중“범위 안에서 기념품·상품권 등 경품”을 “범위에서 2만원 상당의 기념품·상품권 등”으로 변경하고, 제 16조의2를 신설하는 내용임.
- 신설내용은 구청장은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전년도 연간 자원봉사 활동 시간이 100시간 이상인 자원봉사자(표1)에게 자원봉사자증을 발급하고,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구 또는 수탁기관에서 관리 또는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주차요금·사용료·수강료 등을 관련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감면하는 내용임.

< 표1: 연도별 자원봉사 100시간 이상 마포구 자원봉사자 수 >

연도	2018년	2019년	2020년	2021년 9월
100시간 이상 봉사자(a)	1,170명	1,013명	414명	241명
주민등록인구(b)	375,077명	374,035명	371,890명	369,903명
비율 (a/b*100%)	0.31%	0.27%	0.11%	0.07%

-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원봉사 참여자에게 2만원 상당의 기념품·상품권을 제공하고 연간 100시간 이상 우수 자원봉사자의 공공시설 이용 우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구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에 해당하지 않음.
- 또한, 자원봉사 참여자에게 2만원 상당의 기념품·상품권을 제공하

는 것은 주민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자원봉사활동의 기여와 저변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며,

- 연간 100시간 이상 우수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자증을 발급하고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의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자원봉사자의 자긍심 고취 및 지속적 자원봉사 참여를 유도하여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5. 토론요지: 없음
6. 심사결과: 원안가결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8. 기타: 없음